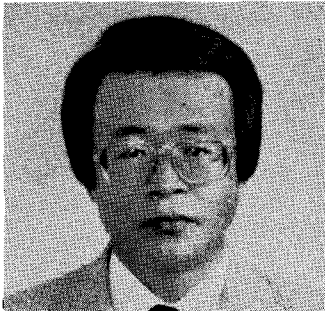


技術開發과 辨理士의 役割



李 泰 鎬

〈第一製糖(株) 特許部長·辨理士〉

1. 序言

돌이켜보건데 우리경제가 1977년에 수출 목표 100억불을 달성함에 따라 비로소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하여 그 이듬해부터 정부주도하에 기업체로 하여금 민간연구소와 특허 전담부서의 설치를 꾸준히 장려해온 결과 금년들어 민간기업부설 연구소는 1천개를 돌파하였고, 6백50여개에 이르는 기업체에서 특허전담부서가 설치되는 등 외형상으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민간연구소 중에서 연구원 10명 미만의 업체가 무려 3백 50여개나 되고 연간 연구개발비 5억원 이하의 연구소가 전체

의 절반을 넘는 5백 10개소에 이르고 또한 특허전담부서가課단위 이상의 조직으로서 5명 이상의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기업체의 수는 2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전략적 경영의 차원에서 산업재산권의 전문가인 변리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전자업계에 있어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만이 국내시장을 개방한 후 大同, 三浦 등과 같은 대형가전업체가 6개월만에 일본제품 등에 시장을 뺏기고 파산지경에 이르러 결국 일본의 유명 전자업체의 수입대리점으로 전략하고 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교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 신문지상 등 매스컴을 통하여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관세철폐, 덤핑방지, 기술이전의 회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대외무역 개방 압력 등 실로 급변하고 있는 경제환경에 우리기업도 바야흐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날로 치열해져가고 있는 냉엄한 기술경쟁속에서 살아남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연구개발 부문에 경영자원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특허법을 사무소 소속 변리사의 역할

최근 대한변리사회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금년 6월 현재 국내에서 개업중인 변리사는 모두 2백 92명에 이르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필자의 짐작으로는 이 중에서 상당수의 변리사가 거의 대부분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소위 고용변리사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것도 주로 외국사건을 위주로 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특허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그 이 유로는 아무래도 국내사건을 위주로 하는 사무소는 외국사건을 위주로 하는 사무소에 비해서 인건비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고급인력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고용변리사는 그 전공분야별로 각기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를 권리별로 나누어 본다면 특허·실용

신안을 담당하는 이공계 변리사와 의장·상표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인문계 변리사의 두부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물론 이와같은 구분기준은 출원 및 등록 단계에 있어서 그 의의가 있으며 일단 권리화가 된 후에 발생하는 분쟁사건, 예컨대 특허관련 심판 또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이공계 변리사와 인문계 변리사(또는 변호사)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법적·기술적 양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사건 비중이 큰 특허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고용변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완벽한 실무경험의 습득, 외국어 능력의 함양,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사무소 운영기법의 터득 등과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기업체에 있어서 변리사의 필요성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특허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많은 변리사가 주로 내국인에 대항하여 외국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제 우리기업도 격동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술중시의 경영체제를 하루빨리 확

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과 기업체도 이때까지 특허전담부서의 설치라는 차원에서 한단계 진전하여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첨병이라 할 수 있는 변리사를 대거 양성하여 전문분야별 변리사 위주의 산업재산권 관리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발전적 풍토조성은 결국 기업체에 있어서는 최고 경영자의 관심도와 의지에 달려있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특허청에서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양질의 변리사가 다수 배출될 수 있도록 현행 변리사법과 관계 법령을 과감히 개정하여 기업체는 물론 특허법률사무소에 있어서도 변리사가 직접 사건처리의 많은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다같이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체의 경우 산업재산권의 출원이나 심판 등 특허청 관련 업무는 대부분 외부 변리사 사무소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사실 특허법률사무소도 전공분야별 인력구성이나 자료관리체제 또는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에 따라 서어비스의 質的 면에서 차이가 많은 실정이다. 특허전담 부서의 책임자는 일차적으로 권리화가 되기까지 관계되는 모든 사내의

의 활동을 리드하고 아울러 심판이나 소송 등 권리분쟁 사건처리에 자신의 전문지식과 타인의 능력을 최대한 결집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 특허전담부서의 지위는 곧 그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사업확장의 규모에 달려있다. 금년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걸프전쟁에서 다국적군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다 준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최첨단 기술이었다는 사실은 마야흐로 기술전쟁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좋은 본보기라 아니할 수가 없다. 앞으로 특허전담부서는 기술집약적 산업화 추세에 발맞추어 과거와는 달리 기업경영의 전략적 핵심부서의 하나로 부상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재 국내 모 전자업체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이나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미국인 변리사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머지않아 국내의 대기업에서 일본이나 미국 기업의 경우와 같이 경륜 많고 유능한 변리사를 다수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리사의 활동범위가 넓어질 수록 그리고 각계에서 변리사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될 수록 우리 경제는 기술입국의 대전환기를 그만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